제재조치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화손해보험㈜

2. 조치일 : 2017. 2. 9.

3. 조치내용

제재 대상	제재 내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4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PF투자안 심사프로세스 정비

내부 「프로젝트 금융지침」에 따르면 PF투자안 검토시 사업수행능력, 채권회수가능성 등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고, 산정한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인 투자안의 경우 이를 자산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,

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보증하는 엔에이치에프제3호공공임대주택 리츠 등 5건의 투자안과 관련하여, 공공임대리츠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없어 '일반 부동산 개발PF평가기준'을 적용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였고,

이 과정에서 LH공사 미분양매입확약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이유로 동 확약 및 보증과는 무관한 사업성(토지확보, 인허가), 사업 수행능력(시공사 등급, 시공능력 평가) 등의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됨

한편, 내부 「대체투자 운용기준」에 따르면 '부동산개발금융' 투자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최소수익률(목표수익률)을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건설사의 회사채 유통수익률 대비 +50bp 내외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

회사는 엔에이치에프제3호공공임대주택 리츠 등 공공임대리츠 4건에 투자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보증을 이유로 목표수익률 설정·달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, 실제로 그 중 3건은 목표수익률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,

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투자 관련 적합한 평가기준과 심사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(2) 리스크관리위원회 상정 대상 확대 및 통합한도 관리 강화

내부 「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」 등에 따라 '신용등급 AAA 거래상대방의 원금보장 거래'에 대하여 2천억원* 초과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,

* 1,500억원 초과 ~ 2천억원 이하는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운영

회사는 검사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PF대출 및 모기지 보증대출 등이 총 20건으로, 약정금액 기준 9,645억원, 잔액 기준 4,869억원에 달하고 있어, 동 보증이 포함된 투자 건의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에 해당하여 누적 합산금액이 2천억원 초과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, 개별 투자금액 기준*을 적용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(혹은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)에 상정하지 않고 임원 전결 또는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음

* 차주에 대하여는 개별 투자 건만이 아닌 차주별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위원회 등에 상정

또한 내부 「자산운용 심사기준」에 따르면 차주별로 지급보증 등 간접 익스포저를 포함하여 자산운용 (통합)한도*를 부여하고, 심사등급 A- 이상의 경우 총자산의 4%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,

* 주식, 채권, 신용공여 등 직접 익스포져 + 채무인수, 지급보증 등 간접 익스포져

회사는 간접 익스포저만 보유한 거래처의 경우 구분하여 별도의 통합한도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, 검사일 현재 간접 익스포저(지급보증)만 보유한 거래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익스포저가 약정금액 기준으로 총자산* 대비 8.1%, 잔액 기준 4.1%에 해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
* '16.6월말 회사 총자산 11조 8,519억원 기준

따라서 위원회 상정 대상 선정기준을 차주 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적용할 수

있도록 개선하고, 간접 익스포저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통합한도를 부여하여 집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

(3) 자산운용 및 사후관리 업무분장 개선

보험회사는 운용(Front)업무, 심사(Middle)업무, 사후관리(Back)업무 상호간에 균형과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를 분산시키는 등 조직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,

회사는 운용부서인 기업금융파트가 대출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적립, 대출운용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(Back)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,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를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고,

또한 심사부서인 투·융자심사파트(파트원 4명)는 신규 투·융자건에 대한 거래 심사 및 리뷰(Review)건에 대한 정기심사, 반기심사, 정밀심사, 등급관리 등 다양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,

'16.3.~8. 기간 중 업무적체* 등으로 인해 투자집행 이후 심사기준일이 도래한 65건**에 대하여는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, 운용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심사인력 보강 등 조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* 심사파트 월평균 18건, 심사역 1인당 월평균 4.5건
** 정기심사(26건), 반기심사(8건), 등급관리(31건)

(4) 투자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작성 업무 합리화

내부「대체투자 운용기준」제16조에 따르면 '원금보장거래 등 실사가 불필요한 경우 및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물리적,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실사를 원칙'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
투자 검토보고서 등에 실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실사 생략시 그 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동 내용이 일부 누락*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향후에는 실사 관련 내용이 검토보고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* 표본 39건 중 실사를 수행한 16건의 실사 내용 및 근거가 보고서 상 누락

또한 내부「대체투자 운용기준」에 따라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자산분류별 한도를 설정하고,「자산운용 심사기준」에 따라 투자 심사 시 심사대상에 부여하는 거래한도를 검토하여야 함에도

회사는 대체투자 중 비중이 높은 사회기반시설금융(SOC)* 투자건에 대해 거래한도 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**되므로, 향후 심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는 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* 인프라금융(SOC, 신재생에너지, 전력사업, 기타 인프라)으로 한도관리
** SOC 표본 15건 중 13건 누락